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법령은 국립대가 해기사 등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대와 사립대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특정한 분야에서 국가적 인력양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이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규정을 공·사립대까지 확대 적용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 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이나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 (안 제2조의3제7항 신설)

나. 대학이 제7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전임교원을 70% 이상 확보하면 교원확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안 제2조의3제8항)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5. 21. ~ 7. 1.) 예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7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가 해기사(海技士)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를 “대학이 제7항에 따라”로 한다.

⑦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 특정 분야(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는 제외한다)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분야·기준·요건에 따른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illegible]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6916
	(044) 203 - 6836
	(044) 203 - 6917